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은수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029

발의연월일 : 2015. 10. 2.

발 의 자 : 은수미・박홍근・신경민
안규백・유성엽・이개호
이학영・인재근・조정식
황주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카페,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정상 일정기간 사육을 맡기는 동물호텔·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이들 영업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.

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, 동물보관·미용 등의 서비스업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·사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 및 제37조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

6. 동물보관·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

제33조제1항 중 “제3호까지의”를 “제6호까지의”로 한다.

제34조를 삭제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”를 “영업등록을 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”을 “제33조제3항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”를 “제33조제3항제1호에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”을 “제3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②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

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.

제38조제1항제5호 중 “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”를 “제33조제2항에”로 한다.

제42조제3호 중 “제33조 및 제34조에”를 “제33조에”로, 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”을 “신고를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6호 중 “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·신고와”를 “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과”로 한다.

제46조제4항제1호 중 “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”을 “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물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신고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·고양이·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② (생 략)	제32조(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) ① 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6. 동물보관·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영업의 등록)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	제33조(영업의 등록) ① ---------------------제6호까지의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영업의 신고)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	<삭 제>

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·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. 1. 신고를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.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.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	
제35조(영업의 승계)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	제35조(영업의 승계) ① --------영업등록을 한 자--

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(이하 “영업자”라 한다)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(이하 “양수인등”이라 한다)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	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, 제33조제3항 중 “등록”은 “신고”로 본다. 다만,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 ----------제33조제3항을----------. ----------제33조제3항제1호에----------.
제37조(교육)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	제37조(교육) ① 제32조에 따른----------

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	----------.
<신 설>	②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.
②·③ (생 략)	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,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	⑤ 제1항 및 제2항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38조(등록취소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38조(등록취소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----------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5. 제33조제2항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42조(수수료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·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	3. 제33조에---------- ----------신고를---- ------
제45조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·조사·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	제45조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·신고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	6. 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과---------- ------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6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46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
	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④ ----------.
1.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	1.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를--------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